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개요**

**□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펀드**

항목	세부내용
위탁운용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50억원 이내</li> <li>- 성장사다리펀드 300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0억원, 정책금융기관 100억원</li> <li>※ 본 공고에 따라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선정통보를 득한 후 공동출자자의 내부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li> </ul>
선 정 운용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사 이내</li> </ul>
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li> <li>○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li> <li>○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li> <li>○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등</li> <li>*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li> </ul>
운용사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li> <li>○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각각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단, 운용인력은 각각의 운용사에서 동수로 참여 하여 최소 운용인력 이상 참여하여야 함)</li> <li>※ 「신성장 육성 PE펀드」 분야에 중복지원 불가</li> </ul>
운 용 사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출자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li> <li>-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li> <li>* 한국성장금융 : <a href="http://www.kgrowth.or.kr">www.kgrowth.or.kr</a></li> <li>한국산업기술진흥원 : <a href="http://www.kiat.or.kr">www.kiat.or.kr</a></li> <li>한국산업은행 : <a href="http://www.kdb.co.kr">www.kdb.co.kr</a></li> </ul>
접수일시	2017년 3월 14일(화) 09:00 ~ 16:00
심사결과 발 표	<p>2017년 4월 중</p> <p>* 최종 선정은 출자자 내부 승인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확정됨 (2017년 6월 예상)</p>
펀 드 결성시한	<p>2017년 10월</p> <p>*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p>

## 2. 출자분야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기간내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주목적 투자대상

### 주목적 투자대상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계획 사업이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 신산업 분야

(i)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발표 “12대 신산업”(’16.12.21)

(ii) 「新성장정책금융센터」 수립 “新성장공동기준” 해당 산업 및 품목(’16.12.30)

※ 신산업 분야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 ② 초기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초기기업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i)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ii) 투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단, 직전 3년내 매출액 10억원 이상 초과한 적이 없을 것)

## 3. 주요 출자조건

항목	세부내용
최소 결성금액	○ 제안금액 및 출자비율을 감안하여 결정
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45% 이내(전액 중·후순위 출자) - 중순위 출자 35% 이내, 후순위 출자 10% 이내
운용사 최소 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2% 이상 - 운용사 출자금액* 중 최소 출자비율 이상의 금액을 후순위 출자하여야 함 * LLC의 경우 운용인력이 출자하는 경우 운용사 출자비율로 인정
손실분담 구조	○ 펀드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후순위 출자자 - 중순위 출자자 - 선순위 출자자 순으로 분담 (i) 후순위 출자금액 한도내에서 지분율에 따라 우선 손실 분담 (ii) 후순위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손실발생시, 중순위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지분율에 따라 손실 분담 (iii) 손실금액이 중·후순위 출자금액을 초과할 경우, 선순위 출자자가 지분율에 따라 손실 분담

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납입방식	○ 수시납 또는 분할납											
관리보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적용기간</th> <th>관리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투자기간 이내</td> <td>2년 이내</td> <td>약정총액의 2.0% 이하</td> </tr> <tr> <td>2년 경과 ~4년 이내</td> <td>투자집행금액의 2.4% 이하 + 미투자금액의 1.2% 이하</td> </tr> <tr> <td>이후</td> <td>4년 경과</td> <td>투자잔액의 2.0% 이하</td> </tr> </tbody> </table> <p>※ M&amp;A 및 프로젝트형 투자실적이 약정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투자금액에 대한 관리보수율 0.1%P 이내에서 상향 조정 (단, 모든 출자자의 동의 필요)</p>	적용기간		관리보수율	투자기간 이내	2년 이내	약정총액의 2.0% 이하	2년 경과 ~4년 이내	투자집행금액의 2.4% 이하 + 미투자금액의 1.2% 이하	이후	4년 경과	투자잔액의 2.0% 이하
적용기간		관리보수율										
투자기간 이내	2년 이내	약정총액의 2.0% 이하										
	2년 경과 ~4년 이내	투자집행금액의 2.4% 이하 + 미투자금액의 1.2% 이하										
이후	4년 경과	투자잔액의 2.0% 이하										
기본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IRR 7%) 상회 시 초과이익의 20% 이내 지급											
추가 성과보수	<p>○ 본 공고 출자자는 별도 기준수익률(IRR 5%)을 초과할 경우, <b>(I) M&amp;A 및 프로젝트형 투자실적</b>과 <b>(II) 기술금융 투자실적</b>에 연동하여 추가 성과보수 지급 (단, I, II 합산하여 15% 이내)</p> <p><b>(I) M&amp;A 및 프로젝트형 투자실적*</b> 합계가 약정총액의 20% 이상일 경우, 본 공고 출자자에 지급될 초과이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급</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b>* M&amp;A 및 프로젝트형 투자실적</b></p> <p>① 사업재편형 M&amp;A 투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6.8.13 시행)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의 동법 제2조에 정의된 "사업재편"과 관련된 투자</p> <p>② 기술혁신형 M&amp;A 투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6.12.1 개정 시행) 제1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영업부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M&amp;A 등 투자</p> <p>③ 프로젝트형 투자 - 기업 내 기존 사업부의 Spin-off 또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형태의 별도 법인, 특정 프로젝트 관련 특수목적회사 등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업 또는 사업에 대한 투자</p> </div> <p><b>(II) 기술금융투자*</b>로 약정총액의 20% 이상을 집행할 경우, 본 공고 출자자에 지급될 초과이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급 (기술금융 투자실적에 연동하여 지급)</p>											

	<p>* <b>기술금융투자</b> : 기술평가기관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기술등급<sup>1)</sup>이 상위 5등급(TI5) 이상인 기업 또는 기술가치평가<sup>2)</sup>를 받은 기업 투자</p> <p>1) 기술신용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KED), 이크레더블 4개사가 평가기관으로 운영 중</p> <p>2)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 다수 기관이 운영 중</p> <p>※ 선정 후 출자자 및 운용사간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p>
이익배분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률별 이익배분 구조(계단식)</li> <li>- 기준수익률 이하 : 출자자 지분율에 따라 배분</li> <li>- 기준수익률 초과 : 초과이익 중 일정비율에 대해 후순위 및 중순위 출자자가 선순위 출자자에 비해 추가로 수익을 수취하는 구조로 제안</li> </ul>
운용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li> <li>○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3인 이상이 참여</li> <li>-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li> </ul> </li> <li>* 투자경력 :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입증가능하여야 함</li> <li>○ 핵심운용인력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자약정액의 합산금액*은 1,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각 펀드의 약정총액 ÷ 각 펀드의 핵심운용인력의 수) 합산금액</li> <li>**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제외함</li> <li>○ 펀드 결성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정관)에 기재</li> </ul>
출자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li> <li>○ 단, 개인출자자(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의 출자가 책임 운용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공고 출자자와 협의하여 결정</li> </ul>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 출자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li> <li>○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li> <li>○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 출자자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li> </ul>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전자보고시스템(ERP) 사용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li> </ul> </li> <li>○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본 공고 출자자가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과정에서 보수구조 등 공고 조건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펀드 조성목적 및 주요 출자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li> <li>○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li> <li>○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개별 협의하여 결정</li> </ul>
----	---

#### 4. 선정 우대 기준

- 펀드 결성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접수 마감일까지 운용사를 제외한 출자자의 출자확약서 등을 제출하거나, 운용사(계열사 제외)가 최소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등 펀드 결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과거 5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제안서 접수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중소기업청 창업 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 본 공고 출자자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안서 작성기준일 현재 위탁운용사가 운용중인 벤처펀드의 총 투자여력(약정 총액의 80% - 기투자실적)의 합산금액이 위탁운용사 전체 운용인력 1인당 평균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본 공고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선정 취소

- 펀드의 최소결성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본 공고 출자자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결성총회가 지연되거나, 펀드가 관련법규에 따라 소관부처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제재 사항 및 기타

### □ 제재 사항

- 결성시한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 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
  - ※ 다만, 관련 법규 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 제한
- 출자확약서 등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간 출자 제한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 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공고일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재직자에 한함

## 7. 선정절차 및 일정

###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사(서류) → 현장실사 → 2차 심사(구술) → 최종선정

□ 선정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17. 3. 14(화)	제안서 접수	접수시간 : 09:00 ~ 16:00
2017. 4월중	심사결과 발표	개별통보
2017. 6월중	최종 선정결과 발표	공동 출자자 승인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차 심사(서류) 평가기준 : 출자 설명회에서 안내 예정

## 8.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방법

- 출자자가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일시 내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

- 2차 심사(구술)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10부)를 제출  
- 분량 :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PT자료, 파일 별도 지참)

□ 접수일시 : 2017년 3월 14일(화) 09:00 ~ 16:00

□ 출자 설명회

- 일시 : 2017년 2월 7일(화)\* 10:30 ~ 11:30

\* 단, 출자 설명회 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장소 : 한국거래소 별관 2층 IR Ro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 9.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별관 4층)
  
- 문의방법 : 한국성장금융 중소벤처팀 (02-2090-9116)  
E-mail : jh.lee@kgrowth.or.kr

2017년 1월 31일

한 국 성 장 금 용 투 자 운 용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한 국 산 업 은 행